

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(제5조의2 관련)

1. 검사장비

가. 지진가속도감지기 검사장비

- 1) 진동대(진동발생장치)
- 2) 기울기검사장비
- 3) 디지털 멀티미터(디지털 방식 전자 계측기)
- 4) 기준감지기
- 5) 기준기록계

나. 지진가속도기록계 검사장비

- 1) 진동대(진동발생장치)
- 2) 함수발생기
- 3) 위성위치확인시스템(GPS) 신호발진기
- 4) 정전압 공급장치
- 5) 기준감지기
- 6) 기준기록계

2. 검사요원

가. 책임 검사인력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

- 1)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 또는 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
- 2)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 또는 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
- 3)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 또는 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- 4)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
- 5)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·검사기관에서의 시험·검사업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

나. 일반 검사인력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

- 1)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
- 2)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 또는 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
- 3)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 또는 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
- 4)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- 5)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·검사기관에서의 시험·검사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- 6) 계측, 전기, 기계, 전자, 환경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(이하 “관련분야” 라 한다)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·진동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- 7) 관련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·진동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- 8) 관련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·진동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